

문서번호	일자리정책과-15083
결재일자	2014. 11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청번호	

★ ◎

부천시청
일자리정책과

주무관	일자리창출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재정국장	
이진숙	이정희	라병오	11/13 김종순	
협조				

- 「생활임금제」의 성공적인 도입 추진을 위한 -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벤치마킹 결과 보고



성 동 구

【 일자리정책과 】

- 「생활임금제」의 성공적인 도입 추진을 위한 -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벤치마킹 결과 보고

생활임금제의 성공적인 도입 검토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,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I 추진 개요

- 일 시: 2014. 11. 11.(화) 10:00 ~ 17:00
- 인 원: 2명(일자리창출팀 강복순, 이진숙 주무관)
- 추진방법: 관련 기관 방문 면담 (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고현주 사무국장)
- 주요내용
 - 부천시 생활임금제 도입 절차 및 도입 과정상의 어려움
 - 생활임금 산출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부천시 생활임금 추진 전반 벤치마킹

II 주요 내용

- 부천시 생활임금제 도입 계기 및 과정
 -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¹⁾ 회의 의제로 생활임금제 도입 논의(2011년)
 -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생활임금추진위원회 구성 운영(2012~2013.2.)
 - 공공부문 임금실태 조사 및 사례 검토, 부천시 생활임금조례(안) 마련
 - 부천시의회 시의원 발의(민주통합당, 새누리당 공동발의)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(2014.1.)
 - 조례상정의결(2013.10.)→ 경기도에서 조례안 재의 요구(2013.11.)

1) 부천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하여 노사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온 지자체로 “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노사공공훈련센터 역할 확대”로 2009년, 201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.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역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도입함. 위원장 부천시장, 위원은 시의원, 상공회 및 노총대표,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됨

→ 부천시 의회 조례 재의결(2013.12.12.)→ 경기도 재소 포기(2014.1.)
 ※ 재의결일(2013.12.12)로 부천시 생활임금제 조례가 제정됨

○ 2014년 부천시 생활임금액 결정(2014.2.) 및 시행(2014.4.)

□ **부천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및 적용 임금**

- 적용 대상(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)
 -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
 - 2014년 기준 378명 적용, 연간 2억7천만 원 소요
- 적용 임금
 - 시급 5,580원으로 2014년도 최저 임금의 7% 적용
 - 근로자간의 임금역전현상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13년도 도시평균 근로자임금 40%(5,860원)까지 적정 구간(6개 구간)을 설정하여 시행

□ **부천시 생활임금제 추진 의의 및 향후 계획**

-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전국 최초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실질화를 도모함
- 서울시,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됨
 - ※ 타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

구 분	추진시기	조례 제정	적용 대상
노원구 성북구	2013년	2014년	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 기관(공단, 문화재단) 소속 근로자
부천시	2014년	2014년	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 기관(공단, 문화재단) 소속 근로자
수원시	2014년	추후 제정	2014년 수원시 기간제 근로자 적용, 2015년 출자 출연 기관으로 확대 추진
서울시	2015년	입법예고 중(2015. 1.~2. 제정 추진)	
도봉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동작구, 강동구 2015년 도입 검토 중			

- 향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
- 대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생활임금제 홍보 및 인식 확산 계획

Ⅲ 검토 의견

- **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**
 - 부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 - 노사민정협의회가 없는 우리구의 경우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거나 간담회,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
- **소속 근로자 실태 조사 실시**
 - 부천시는 부천시, 부천시설공단 및 부천문화재단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되 일일 근무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 지급
 - 우리구 도입시 소속 근로자의 임금 실태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타 자치구 사례를 감안하여 생활임금제 적용 시 소요 예산을 적용 대상별로 산출
 - 우리구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시행 추진 필요
- **생활임금제 적용 방식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**
 - 2014년 노원,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월 1,432,000원(시간급 6,852원)으로 월 지급 총액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부천시는 생활임금액 시급(5,580원~5,860원)×근로시간으로 기본급, 주휴수당, 월차수당 등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음. 또한 근로자간의 임금역전현상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13년도 도시평균근로자임금 40%(5,860원)까지 6개 구간을 설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함.
 - 우리구 도입시 생활임금액 산출 및 적용 방법 결정시 노원구(성북구) 방식, 부천시 방식, 제3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- **우리구 여건에 맞는 방안 도입 노력**
 -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라는 생활임금 제도의 의미를 최대화하면서 근로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구 재정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임금제를 추진하되

- 적용 대상자 선정 및 적용 방식은 지역 의견과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
생활임금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

IV 관련 사진



V 향후 추진 계획

- 2014. 12. 생활임금제 실시 기본 계획 수립
- 2015. 1. 구 및 성동도시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실시
- 2015. 1.~ 2. 생활임금제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조례(안) 마련. 끝.